

대전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219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0. 14. 접수 제342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2. 5. 6. 원고에게 ‘원고는 C에게, 2022. 5. 6. 5억 원 및 2022. 7. 20.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C은 이를 차용하기로 하며, 변제기일은 2023. 1. 1.로 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2년 제13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22. 10. 14.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0. 14. 접수 제3429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2. 15. 접수 제5126호로 채권최고액 57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2023. 3. 17.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합계 313,872,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면탈하고자 체결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7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저당권자 E이 2022. 10. 14. 무렵 위 근저당권과 관련해 C에게 갖고 있던 실제 채권액은 9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앞서 감정평가액인 313,872,000원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575,000,000원에 달하여 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위 채권이 허위라거나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북포시 G

대

106㎡

2. (건물)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제 1종 근린생활시설

1층 81.6㎡

2층 81.6㎡ (합 163.2㎡)

